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13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2월 25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위탁기간이 1년에서 2년인 재계약·재위탁 사무는 종합성과평가를 위한 충분한 대상기간과 사업추진실적을 확보하기 어려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위해 제출되는 종합성과평가 보고서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계약·재위탁은 예외를 인정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되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함(안 제4조의3 제5항).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<수정안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(생략)	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	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 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6년 ----- ----- ----- -----.	② <u><개정안과 같음></u>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<u>하는 경우 민간위탁</u>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	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<u>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</u>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	③ <u><개정안과 같음></u>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	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<u>동의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</u>	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<u>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</u> 다만, <u>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</u> 는 예외로 한다.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제2항 중 “7년”을 “6년”로 한다.

제4조의3제3항 중 “하는 경우 민간위탁”을 “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”로 한다.

제4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·구 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<u>하는 경우 민간위탁</u> 성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 align="right">< 신 설 ></p>	<p>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<u>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</u>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</p> <p>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⑤ <u>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·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</u></p>